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휴일의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538
----------	------

2020년 6월 30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5월 25일 강동길 의원 발의
2. 회부일자 : 2020년 5월 29일
3. 상정일자 : 제295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20년 06월 18일 상정·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강동길 의원)

1. 제안이유

- 야간시간대나 공휴일 등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휴업함에 따라 의사의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경증 질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하게 됨으로써 응급실 과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진료가 필요한 경증환자들이 현실적으로 진료 가능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는 데 어려움이 많음.
- 이에 야간시간대나 공휴일 등에도 의사의 진료를 받거나 의사의 진단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공공 야간의원”을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

로써, 야간·휴일 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는 한편,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야간 진료로 원활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야간·휴일의원 지정 및 지원을 통해 평일 야간, 휴일 등에 시민과 관광객 등이 필요할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야간·휴일의원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야간·휴일의원 지정 및 운영시간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지정된 야간·휴일의원의 운영실태 조사와 지도·감독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마.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것을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의료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 해당 사항 없음.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제정안의 취지

- 제정안은 야간 혹은 공휴일 등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휴업함에 따라 의사의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응급환자가 아닌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함에 따라 응급실 과밀화가 발생함으로 치료가 급한 응급 환자의 진료가 어려워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동 시간대에 진료가 필요한 경증 환자들이 응급실이 아닌 진료가 가능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 야간의원”을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야간 진료로 원활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되었음.

2 주요내용 검토

가. 조례안 주요 내용

- 본 조례안은 야간·휴일 일차의원 지정 및 지원을 통해 평일 야간, 휴일 등에 시민과 관광객 등이 필요할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야간·휴일의원을 지역별로 운영하고자 하고 있음.
- 제정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공공 야간·휴일의원(이하 ‘의원’)이란 시장이 지정하는 의원을 말하여, 시장은 의원의 지정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하다고 하고 있음.

- 제정안에서는 공공 야간·휴일위원의 운영시간을 평일 오후 7시부터 익일 오전6시까지와 토요일 오후 3시부터 당일 자정까지 휴일 오전 0시부터 당일 자정까지로 하고 있으며, 시장은 야간·휴일위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위원회 지정 관리 및 사업의 운영 등에 대해 시장은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으며, 사업 운영에 있어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될 경우 표창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사업의 운영에 관련하여

- 동 조례 제정안 제4조제3항에서 시장은 위원회를 지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제4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재정지원에 대한 법률적 문제는 없다고 할 것임.
- 동 제정안의 비용추계에서는 기존의 야간·휴일 지정 의료기관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방식인 진료건수 당 정액 지원방식으로 비용을 산출하였음.
 - 평일야간 진료에 대한 단가는 의료기관 9,000원, 약국 1,500원으로 하고 진료대상자 1인당 단가를 총 10,500원으로 하였으며, 대상자는 2018년도 사업실적인인 410,737명을 가정하여 연

평균 4,312,739천원의 재정적 지원 비용을 산출하였음.

<표> 서울시 야간·휴일의원 운영 사업 지원금액 상세

구 분	운영시간	의료기관	약국
평일 야간	19:00~22:00	6,000	1,000
	22:00~23:00	9,000	1,500
토요일	15:00~18:00	6,000	1,000
공휴일	09:00~18:00	6,000	1,000

- 아울러, 야간의원 운영에 따른 병원 운영비 증가분 보전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 지급방식으로 지원할 경우 평균인건비¹⁾의 25% 지원시 연간 2,244,000천원, 50% 지원시 4,488,000천원의 추가예산의 수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음.
- 서울시 야간·휴일 지정 진료기관 사업의 지난 3년간의 집행성과를 보면 일부 예산이 불용되고 있는 바 의원급 의료기관등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보임.

<표> 야간·휴일 지정 진료기관 집행률(2017~2019)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율)	집행잔액
2017년	2,893,320	2,573,602(90%)	319,718
2018년	2,893,320	2,555,713(88%)	337,608
2019년	2,600,000	2,337,575(90%)	262,425

- 동 조례 제정안을 통해 사업의 예측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를 이끌어 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1)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 연구보고서(2018.4)에 따르면 전국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보건의료인의 월평균 임금 추정액은 2016년 기준으로 의사의 경우 1천3백만원, 약사는 6백만원, 간호사는 3백만원임

다. 타조례와의 중복 문제

- 서울시의 '야간·휴일 지정 진료기관 사업'의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되었던 기존 「서울시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유사하나, 운영시간·사업의 대상·사업의 운영 관리 등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사업의 대상에 관광객을 포함하였고, 토요일 및 휴일에서의 운영 시간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있음.
 - 사업의 관리에 있어, 기존조례에서는 시장이 규칙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본 제정안에서는 시장이 사업을 지도, 감독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음. 또한, 사업 추진의 동력 확보를 위해 시장 표창을 명문화하고 있음.

3 종합의견

- 제정안은 공공 야간·휴일의료 기관의 운영을 통해 원활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 가능하도록 제안된 안으로 경증 질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하게 됨으로써 응급실 과밀화가 발생하고 경증 환자의 응급실 방문으로 인해 불필요한 응급의료 비용의 발생을 낮춰 시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안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 살펴보아야 할 점은 지난 본회의 심의 의결된 「서울시 공공 야간·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상당 부분 유사한 점이 있어 중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사업의 대상을 관광객으로 확대하거나, 의원의 지정에

있어 지역별 균형을 명문화함으로써 사업 운영에 있어 시민의 편의와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 있어 조례 제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다고 할 수 있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휴일의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동길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538
----------	------

발의년월일 : 2020년 5월 25일
발 의 자 : 강동길 의원(1명)
찬 성 자 : 김인호, 김제리, 김호평,
박순규, 송아량, 우형찬,
이승미, 정지권, 정진술,
황인구 의원(10명)

1. 제안이유

- 야간시간대나 공휴일 등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휴업함에 따라 의사의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경증 질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하게 됨으로써 응급실 과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진료가 필요한 경증 환자들이 현실적으로 진료 가능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는 데 어려움이 많음.
- 이에 야간시간대나 공휴일 등에도 의사의 진료를 받거나 의사의 진단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공공 야간의원”을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야간·휴일 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는 한편,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야간 진료로 원활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야간·휴일의원 지정 및 지원을 통해 평일 야간, 휴일 등에 시민과 관광객 등이 필요할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야간·휴일의원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야간·휴일의원 지정 및 운영시간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지정된 야간·휴일의원의 운영실태 조사와 지도·감독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마.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것을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의료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등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다. 기 타 : 해당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휴일의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 야간·휴일의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관광객 등의 건강 증진 및 의료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 야간·휴일의원”(이하 “야간·휴일의원”이라 한다)이란 제4조 제1항에 따라 운영되도록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서울특별시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2. “의원급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중에서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야간·휴일의원 지정 및 지원을 통해 평일 야간, 휴일 등에 시민과 관광객 등(이하 “시민 등”이라 한다)이 필요할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야간·휴일의원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시민 등에 대한 의료접근성 향상 등을 위하여 야간·휴일의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야간·휴일의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간 내에서 운영시간을 정한다.

1. 평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2. 토요일: 오후 3시부터 당일 자정까지
3. 휴일: 오전 0시부터 당일 자정까지(단, 휴일 전일이 평일인 경우 오전 6시부터 당일 자정까지)

- ③ 시장은 야간·휴일의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야간·휴일의원의 지정 및 운영 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관리) ① 시장은 야간·휴일의원의 운영실태를 확인·조사할 수 있고, 야간·휴일의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조사 결과, 야간·휴일의원이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야간·휴일의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표창) 시장은 야간·휴일의원의 운영으로 시민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대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휴일의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휴일의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지정 및 지원)에 따라 시가 지정한 야간·휴일의원에서 야간·휴일 등 정해진 시간에 운영하는 것에 대한 재정적 지원 비용 발생
 - 본 조례안에서 제4조를 제외한 다른 조항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시 지정 야간·휴일의원 재정적 지원 비용

나. 전제

- 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물가상승률은 반영하지 않음

다. 추계기간 : 5년

라. 방법

- 서울시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 운영’ 사업이 현재도 추진중이나 본 조례안은 그 운영 시간을 늘리는 것이므로 진료시간 확대에 따른 추가 지원비용 산출

※ 서울시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 사업 및 조례제정안 상 운영시간 비교

구 분	서울시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 사업	제정조례안	비 고
평일 야간	19:00~22:00 또는 23:00	19:00~익일 06:00	8시간(7시간) 증가
토요일	15:00~18:00	15:00~24:00	6시간 증가
공휴일	09:00~18:00	24시간(단, 휴일 전일이 평일인 경우 06:00~ 24:00)	15시간 증가
' 20년 예산액	25억원	-	

- 본 조례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현재 운영중인 야간·휴일 지정 진료기관 44개 중 병원급을 제외한 의원급 34개만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나, 진료희망자는 증감에 영향받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지원방식은 기존과 동일한 진료건수 당 정액 지원방식으로 하되 지원단가는 평일단가 (22:00~23:00)인 의료기관 9,000원, 약국 1,500원으로 가정하여 진료대상자 1인당 총 10,500원으로 지원단가 산출

- 단, 2018년 서울시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 운영’ 사업 추진실적으로 볼 때 동대문구의 실적이 도봉구의 37배임. 지역편차와 야간운영에 따른 병원 운영비 증가분 보전 등을 고려한 인건비 지원방식으로 갈 경우 평균인건비의 25%지원시 연간 2,244,000천원, 50%지원시 연간 4,488,000천원 추가소요 가능(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 연구보고서(2018.4)에 따르면 전국보건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보건의료인의 월평균 임금 추정액은 2016년 기준으로 의사의 경우 1천3백만원, 약사는 6백만원, 간호사는 3백만원임)

※ 서울시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 사업 1건당 지원금액 상세(2019년 기준)

구 분	운영시간	의료기관	약국
평일 야간	19:00~22:00	6,000	1,000
	22:00~23:00	9,000	1,500
토요일	15:00~18:00	6,000	1,000
공휴일	09:00~18:00	6,000	1,000

- 진료시간을 본 조례안과 같이 확대시 증가되는 진료환자 수는 추정이 곤란하나 기존사업과 유사한 수준의 진료희망자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410,737명으로 진료환자 수 추정 (2018년 기준 의료기관과 약국을 합친 사업실적은 840,945명이나 이중 진료환자 수는 410,737명)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합계) ≙ 21,563,695천원(연평균 4,312,739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시 지정 야간 휴일의원 재정적 지원 비용 (안 제4조)	4,312,739	4,312,739	4,312,739	4,312,739	4,312,739	21,563,695
	소계(b)	4,312,739	4,312,739	4,312,739	4,312,739	4,312,739	21,563,695
□총 비용(b-a)		4,312,739	4,312,739	4,312,739	4,312,739	4,312,739	21,563,695

4. 덧붙이는 의견 : 없음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주 무 관 채소영

☎ 02-2180-7942

e-mail : liz1998@seoul.go.kr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시 지정 야간·휴일의원 재정적 지원 비용

2. 세부추계내역

- 시 지정 야간·휴일의원 재정적 지원 비용 ≒ 21,563,695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간 시 지정 야간·휴일의원 재정적 지원 비용)_i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 연간 시 지정 야간·휴일의원 재정적 지원 비용
= 지원인원 수 × 지원단가
= 410,737명 × 10,500원
= 4,312,739천원